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및 파주 운정3지구 A7BL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 홈페이지(https://www.pj-jeil3.co.kr)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주택 - 47705호(2021.11.11.)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내 A7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18층, 8개동 총452세대
[특별공급 262세대 (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90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6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수)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민영 주택	2021000825	01	084,9404A	84A	84,9404	24,3677	109,3081	65,6190	174,9271	64,9756	104	76	14	11	28	3	20	28	6
		02	084,9958B	84B	84,9958	24,1366	109,1324	65,6618	174,7942	65,0180	188	131	24	18	46	6	37	57	11
		03	084,9863C	84C	84,9863	25,5243	110,5106	65,6545	176,1651	65,0107	54	42	7	6	16	2	11	12	3
		04	118,9928A	118A	118,9928	32,1275	151,1203	91,9255	243,0458	91,0242	106	13	-	10	-	3	-	93	6
		합 계											452	262	45	45	90	14	68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 수	층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잔금(30%)				
084,9404A	601동(1호,5호), 607동(1호,5호), 608동(1호,5호)	104	1층	6	146,549,000	267,451,000	-	414,000,000	10,000,000	3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2층	6	146,549,000	274,451,000	-	421,000,000	10,000,000	3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3층	6	146,549,000	280,451,000	-	427,000,000	10,000,000	3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4층	6	146,549,000	290,451,000	-	437,000,000	10,000,000	3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131,100,000			
			5층	6	146,549,000	299,451,000	-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6층 이상	74	146,549,000	308,451,000	-	455,000,000	10,000,000	3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084,9958B	601동(2호), 604동(1호,2호,3호,5호), 605동(1호,2호,3호,5호), 607동(3호), 608동(3호)	188	1층	8	146,645,000	267,355,000	-	414,000,000	10,000,000	3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2층	11	146,645,000	274,355,000	-	421,000,000	10,000,000	3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3층	11	146,645,000	280,355,000	-	427,000,000	10,000,000	3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4층	11	146,645,000	290,355,000	-	437,000,000	10,000,000	3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131,100,000				
			5층	11	146,645,000	299,355,000	-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6층 이상	136	146,645,000	308,355,000	-	455,000,000	10,000,000	3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084,9863C	601동(3호), 607동(2호), 608동(2호)	54	1층	3	146,628,000	262,372,000	-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2층	3	146,628,000	269,372,000	-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3층	3	146,628,000	276,372,000	-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4층	3	146,628,000	286,372,000	-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5층	3	146,628,000	293,372,000	-	440,000,000	10,000,000	3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6층 이상	39	146,628,000	302,372,000	-	449,000,000	10,000,000	3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118,9928A	602동(1호,2호), 603동(1호,2호), 606동(1호,2호)	106	1층	4	205,300,000	301,545,455	30,154,545	537,000,000	10,000,000	4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2층	6	205,300,000	308,818,182	30,881,818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3층	6	205,300,000	316,090,909	31,609,910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4층	6	205,300,000	327,000,000	32,700,000	565,000,000	10,000,000	4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169,500,000				
			5층	6	205,300,000	337,000,000	33,700,000	576,000,000	10,000,000	4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172,800,000				
			6층 이상	78	205,300,000	349,727,273	34,972,727	590,000,000	10,000,000	4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77,000,000				

2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정	11월 22일(월)	11월 23일(화)	11월 24일(수)	11월 30일(화)	12월 04일(토) ~ 12월 10일(금)	12월 13일(월) ~ 12월 16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예약 방식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 * 계약시간 지연으로 인한 작성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예약 방식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오전 12시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9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양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 상 임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 임신진단서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원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6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혼인한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유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
 -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4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순급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일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